

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500호)

예비심사보고서

1998. 9. 26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3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9. 26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(총괄) : 붙임내역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결산에 대한 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며,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함.
-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 부터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
-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여부와 계산의 과오여부,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,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적법성, 공정성, 효율성 등을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9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